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11. ~ 12. 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35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2. 11.

1. 제정이유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1. 18. ~ 12. 8.) 결과 : 의견 있음
 - 조례안 제6조제2항은 조례안 제2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됨
⇒ 수용 (제6조제2항 삭제)

(원 안) <제2조>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상품권·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6조>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제6조제2항 삭제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1. 18.(여성가족과-24166호)
- 부패영향평가 : 2020. 11. 23.(감사실-998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11. 23.(기획예산실-16414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1. 23.(기획예산실-1641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1. 18.(순천시 공고 제2020-2362호)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순천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상품권·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순천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